

□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허용 여부	내용	비고
명함	허용	· 후보자본인(제6차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결26.3.19) ※ 연설, 대담 및 간담회 장소에서 배포 가능 · 성명·사진, 전화번호, 학력·경력, 그밖의 홍보사항 · 길이 : 9센티미터, 너비 : 5센티미터 · 제한 없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준함
전화·전자 홍보 등	일부허용	·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 · 총 8회 발송가능(후보자 개별발송) (※후보자의 8회 발송에 포함, 정부선관위 신고 사항)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
		· 문자메시지 · 일반문자메시지 발송 허용 (20건 이하 발송)	
		· 투표알림문자 : 3회 이내	※선관위 발송
		전화, 온라인(E-mail, SNS 등) (전화, 온라인) 제한 없이 허용	※녹음한 후보자 음성 사용한 전화홍보(투표 독려 포함)는 불허
금지 및 제한사항		1. 연설회장내에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홍보물 및 명함배부는 연설회장 외부(현관·로비·실외)에서 투표개시 선언 전까지 가능 2. 애드벌룬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대회장 안팎의 지지자 현수막은 철거) 3. 음향기기(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기기 등)를 사용하는 행위 4. 소음을 유발하는 용품(징, 팽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을 사용하는 행위 5. 그 외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6장(선거운동)에서 금하는 선거운동 행위 6. 당원 대상으로 물건을 나눠주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금지함 (부채, 규정되지 않은 홍보물 등)	
중앙당 확인사항 및 기타사항		※ 원칙적으로 투표 당일 선거운동 불가(투표 독려만 가능) － 오프라인 선거운동, 말로 하는(전화 포함) 선거운동 불가 －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불가 ※ 투표 당일 온라인(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 － 단, 집단적 SNS 선거운동 불가 ※ ARS음성녹음을 통한 선거운동은 투표일뿐만 아니라 경선운동기간동안 불가	